

# IMO 제12차 산적액체 · 가스화물 전문위원회(BLG) 참석결과 보고

##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제12차 산적액체 · 가스화물 전문위원회(12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 기간/장소 : 2008. 2. 4. ~ 2. 8.(5일) / 영국 런던, Royal Horticultural Halls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선임검사원 장용훈

## II. 의제목차

- 의제1. 의제 채택
- 의제2. IMO 타 기구의 결정사항
- 의제3. 위험화학품의 안전 및 오염유해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정안의 준비
- 의제4. 생화학적 연료유 및 혼합유의 운송에 관한 요건의 적용
- 의제5. 2004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을 위한 지침의 개발
- 의제6. MARPOL 부속서 6 및 NO<sub>x</sub> 기술코드의 검토
- 의제7.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규정 개발
- 의제8.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이송작업 중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 부속서 1의 개정
- 의제9. 사고 분석
- 의제10.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
- 의제11. 선체 생물부착에 의한 수생 생물종 이동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의 개발

- 의제12. MARPOL 부속서 I 화물 및 연료유의 MSDS 권고안에 대한 검토
- 의제13. IGC Code의 개정
- 의제14. BLG 13 의제 및 작업계획
- 의제15. 2009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제16. 기타 작업
- 의제17. 위원회 보고

##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1	의제 채택
------	-------

- 의제는 Provisional Agenda (BLG 12/1/1) 대로 이의 없이 채택함
- 회기 중 3개의 실무작업반(W.G)과 1개의 초안 작업반(D.G)를 구성하였음
  - 작업반(WG) 1 : MARPOL 부속서 6 및 NO<sub>x</sub> 기술코드의 검토(의제6)
  - 작업반(WG) 2 : 2004 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을 위한 지침의 개발(의제5)
  - 작업반(WG) 3 : 위험화학품 분류 및 최소운송 요건 검토(의제3, 의제4)
  - 초안작업반(DG) 2 : 선박간 유류 이송 작업중 해양오염방지(의제8)

의제 2	타 기구의 결정사항
------	------------

- 전문위원회는 MEPC56, MSC83, DE50, SLF50 및 FSI15결정사항을 주목하고 관련의

제 논의시 동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b>의제 3</b>	<b>위험화학품의 안전 및 오염유해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정안의 준비</b>
-------------	--

**신규화학 물질에 대한 선박운송요건 결정**

- ESPH 작업반에서 결정한 아래 11종의 신규 물질에 대한 최소운송요건에 동의함
- Ethoxylated tallow amine( >95%)(BLG 12/3/1, 싱가포르)에 대한 최소운송요건을 결정함
- Dialkyl thiophosphates sodium salts solution(BLG 12/3/2, 미국)은 GESAMP/EHS에 제출된 자료와 BLG에 제출한 유해성 자료에 상이점이 발견되어 ESPH 14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신규 화학물질 평가를 위해 제출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GESAMP/EHS에 제출된 자료와 BLG에 제출되는 자료가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고 통지함

**신규 탱크세척 첨가제 관련 논의**

- 작업반에서 평가한 50종의 탱크세척 첨가제의 평가결과에 동의함
- 회기 중에 제출된 탱크세척 첨가제의 평가는 평가를 의뢰한 국가간에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총 23종의 신규 탱크세척 첨가제의 사용을 승인함
- 작업반은 탱크세척 첨가제 정보는 IMO에 보 관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동 자료를 잘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함

**개정된 탱크세척 첨가제 평가(승인)기준 공지**

- MEPC 56의 결정에 따라 기존 지침서(MEPC.1/Circ.363)에 따라 평가(승인)된 첨가제는 2010년 7월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개정된 지침서에 따라 유효기간 이전에 재평가를 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함

- 상기 정보를 회람하기 위하여 ESPH 작업반에서 개발한 BLG Circular 초안을 승인함

**잠정평가물질(MEPC.2/Circ.) 목록 검토**

- 개정될 IBC Code(2009. 1. 1적용)와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 연도에 발행될 잠정평가물질목록(MEPC.2/Circ.14)은 2009. 1. 1 이후에 유효하다고 결정함

**GESAMP/EHS 제44차 회의 후속조치 검토**

- 신규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 받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제출양식에 맞추어 관련정보를 정확히 제출하도록 각 국에 요청함

**GESAMP/EHS 의장의 ESPH 작업반 회의 참가 관련**

- ESPH 작업반은 GESAMP/EHS 의장이 ESPH 작업반 회의에 참가하여 화학물질 평가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상위 위원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함

**GESAMP/EHS 유해성 보고서의 통일해석**

- ESPH 작업반이 정리한 화학물질의 오염분류, 선형 및 최소운송요건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보고서에 관한 통일해석에 동의함

**바이오연료유 및 그 혼합물의 운송요건**

- 현재로서는 바이오연료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운송요건 검토가 어려워, 연료유에 대한 MSDS제출이 의무화되는 2009. 7. 1 이후에 검토하기로 동의함

- 향후에는 바이오연료유를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알코올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운송요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함

- ① 석유류가 85%이상 함유 - MARPOL Annex I 화물로 취급
- ② 석유류가 1%를 초과하고 85% 미만 함유 - MARPOL Annex II 화물로 취급하여 오염분류 X, 선형 2로 운송

- ③ 석유류가 1%이하 함유된 단일 바이오연료유 - MARPOL Annex II 화물로 취급
- 석유류가 1%이상 85%미만 혼합되는(Band 2) 바이오 연료유의 운송을 위해서는 제3자 동의나 확정된 최소운송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국가에서는 동 사항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ESPH 14(2008, 10 개최예정)에 많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IBC Code 제19장의 화학물질 동의어 및 색인 검토
  - 화학물질 동의어 및 색인이 수록되어 있는 IBC Code 제19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전문가가 요구된다며 IMO 회원국에 동 사항을 요청함
  - 특히, ESPH 14차에서 최종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GESAMP/EHS 운영자금 조성방안
  - GESAMP/EHS 운영자금 조성을 위하여 IMO와 산업계(평가의뢰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MEPC 56이 결정함
  - MEPC.2/Circ.의 Annex 2에 물질을 등록한 화학물질 운송자(제조사)도 일부 비용을 5년 주기로 부담해야 한다는 ESPH 제안에 동의함

의제 4	<b>생화학적 연료유 및 혼합유의 운송에 관한 요건의 적용</b>
------	--------------------------------------

○ 제출된 안건 없음

의제 5	<b>2004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을 위한 지침의 개발</b>
------	--

- 선박평형수 샘플링 가이드라인(G2) 초안(관련문서 : BLG 12/5/1, BLG 12/4/11, BLG 12/5/12, BLG 12/5/13, BLG 12/5/14)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G1-G14)을 작성할 것을 요구

- BLG 11/4/1(사무국)에서 선박평형수 샘플링에 대한 가이드라인(G2)의 초안이 마련되고, BLG 12/5/1(영국)에서 이의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었음
- BLG12에서 작업반 회의를 통해 BLG 12/5/1의 G2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논의·수정작업할 것을 요구하였음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D-1 규정 만족을 위한 샘플링에서 화학적, 물리적 요소의 사용
- 배출관에서 샘플링을 위한 적정 위치
  - 배출관을 통한 샘플링 위치에 대해 BLG 12/5/14(대한민국)의 의제와 미국의 세미나 자료를 통해 Part 1의 5장을 완성함
  - 샘플링 위치에 대한 배출관 전후 수직관 규정이 삭제됨
- 샘플링 기구의 디자인과 기술 명시
  - 미국에서 샘플링 포트 디자인에 대한 초안을 마련
  - 샘플링 포트는 배출관과 나란한 L자형 파이프
- 샘플링 프로토콜의 상위수준 가이드 논의
  - 샘플링 절차와, 처리방법, 분석방법에 대해 G2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WG은 샘플링 분석방법과 기구가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추천할 만한 프로토콜이 없음에 동의함
  - 작업반은 협약이 강제화되기 전에 선박평형수 샘플링과 분석기준에 대한 IMO circular를 준비하기로 함
- 미생물의 최소 크기 정의
  - 미생물의 크기는 주몸체의 가장 작은 부분(더듬이 등 제외)으로 정의

- 샘플링 분석을 위한 운송기구와 방법
  - 샘플링의 보관용기의 밀폐와 라벨링 방법 등에 대해 명시
- 샘플링 볼륨
  - 현재 분석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만 준비함
- 완성된 G2의 기술 가이드라인 목록(11개 항목을 8개 항목으로 함축)
  - Part 1 : 배출관을 통한 샘플링
  - Part 2 : 선박평형수 탱크를 통한 샘플링 (맨홀, 사운딩 파이프 & 에어 파이프, 펌프의 사용에 대한 내용)
  - Part 3 : 샘플링 & 분석 프로토콜
  - Part 4 : 샘플 데이터 양식
  - Part 5 : 위험성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Part 6 : 선박평형수 샘플링 장비
  - Part 7 : 접근, 저장, 라벨링, 그리고 운송
  - Part 8 : 전달 기록
- G2 가이드라인에 대한 본회의 결정사항
  - 많은 국가에서 WG에서 작업한 G2 가이드라인에 Comment가 있어 Comment를 접수 처리할 시간을 위해 의장은 G2 가이드라인을 MEPC58에 보고하기로 결정함

현존선의 선박평형수 관리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술 정보 제공에 대한 부속서(관련문서 : BLG 12/5/5)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현존선에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때 제공되어야 하는 기술사항에 대한 일본의 의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일본이 마련한 초안의 수정 작업을 수행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일본이 마련한 초안의 문장 중 오해의 소지 또는 불명확한 내용에 대하여 문장을 수정하여 정함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 승인(G8)과 활성물질의 승인(G9)에 관한 지침서 관련(관련문서 : BLG 12/5, BLG 12/5/3, BLG 12/5/7, BLG 12/5/9, BLG 12/5/10, BLG 12/5/8)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기 완성된 G8, G9 지침서에 대한 코멘트 문서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WG에서 시간상 논의되지 못해 MEPC.57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함

의제 6	MARPOL 부속서 6 및 NOx 기술 코드의 검토
------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전문위원회는 2005년 7월 개최된 MEPC 53차 회의에서 MARPOL Annex VI 및 NOx 기술코드의 개정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BLG에서 관련 기준 개발을 요구함
-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기준 검토를 위하여 대기오염 작업반 중간회의가 20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Tier II 및 Tier III 기준 (BLG 12/6, BLG 12/6/15, 12/6/16 및 BLG 12/6/25)

- Tier II
  - 작업반은 BLG 12/6/16(FOEI) 및 BLG 12/6/25(China)와 함께 BLG 12/6에 언급된 Tier II의 몇 가지 옵션을 검토하였음
  - FOEI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NOx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체건강의 유해성 및 환경의 실질적인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한 새로운 규제가 수용될 것을 촉구함

- 작업반은 현저한 감소를 실현하기 위하여 Tier II 및 Tier III가 패키지로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함
- 작업반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Tier II NOx 기준과 관련하여 중국이 제안한 아래의 기준을 채택함
  - 130rpm 미만 : [14.36]g/kWh (Tier I 대비 15.5% 감소)
  - 130~2000rpm :  $[44 \times n^{(-0.23)}]$ g/kWh (14.36~7.66 g/kWh 감소, Tier I 대비 15.5~21.8 % 감소)
  - 2000 rpm 이상 : [7.66]g/kWh (Tier I 대비 21.8% 감소)

○ Tier III

- 작업반 의장은 BLG 11차에서 개발되고 BLG-WGAP 2에서 논의되어 BLG 12/6 Annex 2에서 언급된 Tier III의 세가지 옵션을 요약했음
- 일본, 미국, EUROMOT 등의 다양한 제안 기준을 논의한 끝에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MARPOL Annex VI 개정안을 작성함
  - 특정해역인 ECAs 내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에 Tier I 대비 80% 감소(Tier III는 전 세계 연안의 고정된 거리가 아닌 지정된 해역 내에서만 적용됨)

○ 주요개조

- 작업반은 Tier I에서 Tier II, Tier II에서 Tier III로 진행되는 동안 주요개조가 발생 시 어떠한 적용이 필요한지 논의함
- 작업반은 2011년 이후에 엔진의 교체/추가 및 MCR 10% 증가/실질적인 개조 시 적용해야 되는 기준을 나타내는 아래의 표를 만들었음
- Tier II/III NOx 제어 기간 이내의 주요개조, 교체 또는 엔진의 추가

(Major Conversions (MC) within a multi-tiered NOx Control)

건조일자	엔진 증서발행 요건
Pre-2000	동일한 엔진으로 교체시 적용하지 않음
Pre-2000	개조년도에 따라 각 단계(Tier I 2000~ 2010, Tier II 2011~2015)에 적합한 기준 적용
2000~2010 2011~2015	2016년 이후 개조시 건조단계의 기준 적용
2016 +	Tier III 기준 적용

MCR 10% 증가 또는 실질적인 개조 (NOx 기술코드에 정의되어 있음)

건조일자	엔진 증서발행 요건
Pre-2000	주요개조 일자와 관계없이 Tier I
2000~2010	주요개조 일자와 관계없이 Tier I
2011~2015	주요개조 일자와 관계없이 Tier II
2016+	Tier III

- 작업반은 새로운 엔진을 위한 NOx Tier II 및 Tier III 문구 초안 작업을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개정 MARPOL Annex VI Regulation 13 초안에 언급되어 있음

□ 현존엔진의 NOx 기준에 대한 고려 (BLG 12/6, BLG 12/5/13 및 BLG 12/6/30)

- 작업반은 BLG-WGAP2에서 개발되고, BLG 12/6 Annex 2에 언급된 다른 옵션들을 논의함. Marshall Islands, Panama 및 ICS는 BLG 12/6/13 문서를 통해 가격과 노력 대비 실제로 환경적 이득이 있는지 고려해야 됨을 언급하였으며, 미국은 BLG 12/6/30 문서에서 현존엔진의 NOx 감소와 관련된 연료소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현존엔진에 NOx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 옵션을 MARPOL Annex VI 초안에 추가함
  - 1990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탑재되는 [실린더당 배출 용적이 [30/60/90] 리터 이상][출력이 5000kW 이상인 엔진에 적용

- 업그레이드 킷이 사용가능한 엔진들에 대해서는 일체형 장치 적용

NOx 기술코드(BLG 12/6/4/Add.1, BLG 12/6/8, BLG 12/6/10, BLG 12/6/22 및 BLG 12/6/24)

○ 작업반은 다음과 같이 NOx 기술코드에 관한 4가지 미결부분을 검토함

- 연속생산되는 엔진의 증서발행
- 현존엔진의 증서발행 절차 초안
- 직접측정과 감시에 관한 동 코드의 6.4절
- Tier II 및 Tier III NOx 기준의 시험사이클

○ NOx 기술코드의 대안으로 제시한 연속 생산되는 패밀리엔진의 증서발행을 위한 문서인 BLG 12/6/8(EUROMOT)을 검토함. 또한, 연속 생산되는 엔진의 간소화된 증서발행절차를 허용하고, 400GT을 초과하고 실린더당 배출 용적이 30리터 미만인 엔진의 경우, 본선에 Technical File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자 NOx 기술코드의 개정을 소개한 문서인 BLG 12/6/22(미국)를 검토함

○ 연속 생산되는 엔진의 증서발행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함

- 연속 생산되는 개별 엔진의 증서발행 요건은 해당 주관청의 소관임
- 각 엔진은 엔진패밀리 증서 또는 개별 엔진 증서의 일부로써 적합함을 증명하는 증서가 선박에 항상 있어야 함

선박으로부터의 SOx, PM 배출에 관한 옵션 (BLG 12/6/1, BLG 12/6/2)

○ 작업반 회의에서 Scientific Group of Experts의 연구결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유 산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작업반 당사국 간의 토론이 이루어짐

○ BIMCO는 BLG 12/6/2에서 황함량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고 “Micro-SECAs”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으나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함

○ 동 사안이 지닌 환경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들어 최종 결정은 MEPC에서 하도록 3가지 선택안을 마련함

- 부속서 수정시 Micro-SECA(안)이 적용될 때 부속서의 부록3(Appendix 3) 기준이 어떻게 수정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Limited Emission Control Areas” 또는 “Local Emission Control Areas”의 용어 사용

구 분	OPTION 1	OPTION 2	OPTION 3
모든 해역 (Global Limit)		4.50%/m 유지	2012년 이후 3.0%/m
황배출규제 해역 (SECA)	- 2012년 이후 1.00%/m - 2015년 이후 0.50%/m	2012년 이후 0.10%/m	- 2010년 이후 1%/m - 2015년 이후 0.50%/m
특별규제해역 (Micro-SECA)	0.50%/m	-	- 내륙에서 24 nmile 이내 0.10%/m

물체적 배출 판정기준을 포함한 배기가스 세정 장치의 가이드라인(BLG 12/6/Add.1, BLG 12/6/7 및 BLG 12/6/11)

○ BLG 12/6/Add.1 Annex 6에 언급된 BLG-WGAP 2의 결과를 고려하고,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을 검토함. EUROMOT는 BLG 12/6/7에서 세척수 판정기준에서 NOx 배출량이 10% 보다 높아야 됨을 제안함

○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중 마셜아일랜드, 파나마, 그리스, 아일랜드, 유럽연합 및 인터탱고는 배기가스 세정장치에 의해 생성되는 배출물(residues)의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함을 언급함

○ 작업반은 배기가스 세정장치 및 물체적 배출 판정기준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완료함

(Annex 4 Amendments to Draft Revised Guidelines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

시장기반 NOx 배출량 감소 기구(Instruments) (BLG 12/6/Add.1 및 BLG 12/6/20)

○ 작업반에서 BLG 12/6/Add.1 Annex 2 및 BLG 12/6/20(영국)에서 언급된 선박에서 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장기반 배출감소기구(배출권 거래)를 검토하였으나 해결해야 되는 법적 문제점이 많고 복잡하여 추후 더 검토하기로 함

※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7조)

연료유의 황성분 인증 (BLG 12/6/18, BLG 12/6/26)

○ 노르웨이와 독일은 BLG 12/6/18에서 황 제한치를 절대값으로 적용하도록 부속서 6을 수정하자고 제안함. 덴마크와 핀란드는 BLG 12/6/26에서 황성분은 95% 신뢰 수준을 적용하여 인증되어야 함을 제안

- 동 건에 대한 작업반 당사국간의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WG1 Working Paper 부속서1의 regulation 18(6)(b)에 대한 규정 초안(draft provision) 및 protocol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함

대기오염 작업반 회의 결과 부속서

○ Annex 1 Draft Revised MARPOL Annex VI  
 ○ Annex 2 NOx Technical Code with Consolidated Amendments Agreed Prior to BLG 12  
 ○ Annex 3 Draft Amendments to the NOx

Technical Code with Consolidated Amendments Agreed Prior to BLG 12 (BLG 12/WP.6/ADD.2)

○ Annex 4 Amendments to Draft Revised Guidelines for Exhaust Gas Cleaning Systems-MARPOL Annex VI, Regulation 14(4) (BLG 12/6/ADD.1, Annex 6)

**의제 7 |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규정 개발**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SC78차(2004. 5)에서 노르웨이의 제출문서(MSC78/24/8)에 따라 BLG, DE 및 FP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설치된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을 개발할 것을 지시함

○ BLG9차(2005. 4) 전문위원회는 MSC.78의 지시에 따라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위한 지침서의 적절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선박에 가스연료 엔진을 설치하였을 때 그와 연관된 위험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통신 작업반을 구성하고 2007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함

○ BLG10차(2006. 4)에서는 통신작업반이 제출한 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Gas-fuelled engine installations in ships)초안은 서로 다른 기술적인 측면의 반영으로 Code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임시적인 지침서를 개발한 후 동 지침서를 기초로 해서 IGF Code를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

○ BLG11차(2007. 4)에서는 지침서 초안을 동 회기 내에 완료할 수 없어 완료연도를 2009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노르웨이를 의장으로 통신작업반이 구성됨

○ BLG 12차(2008. 2)에서는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여 계속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 부족

으로 초안작업반을 구성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위하여 노르웨이를 의장으로 하는 통신 작업반이 구성되었음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BLG12/7/2(CESA)에서 모든 종류의 가스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과 지침서가 대형 및 최신의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2단계로 접근한다는 것과 개발된 첫 번째 규정은 LNG 운반선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정하였음
- 동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rs. Turid Stemre(노르웨이)를 의장으로 한 통신 작업반을 구성함
- 통신작업반 작업지침(Terms of Reference) 초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3. 통신작업반이 참조할 작업지침 초안 내용

- BLG12/7/1 및 BLG12/7/2 문서뿐만 아니라 DE, FP 및 STW 전문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 설치된 선박의 안전에 대한 지침서 초안의 편집 및 기술적인 검토를 계속함
- IGF Code 개발을 위한 작업계획, 범위 및 초안 마련 작업 준비
- IGF Code 개발과 연계하여, 통신작업반에서 고려하기 위하여 모든 가스연료에 대하여 수행된 안전 분석결과를 수집
- BLG13차에 보고서로 제출

### 의제 8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이송작업 중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MARPOL 부속서 1의 개정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간 유류 이송 작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해양 환경의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MARPOL 73/78 부속서 I 제8장 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임

- 이를 위하여 BLG 10차 전문위원회에서 스페인 주도로 통신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통신작업반은 BLG 10차 전문위원회가 지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한 후 초안을 개발하여 이를 BLG 11/7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산업계는 선박간 유류이송 작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왔음을 주장하면서, 강제적인 규정 대신 지침을 제공하는 수준의 새로운 8장 초안을 제시함
- BLG 11에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완성을 목표로 덴마크 주도의 통신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통신작업반은 BLG 전문위원회가 지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한 후 강제 규정의 초안을 개발하여 이를 BLG 12/8로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제40.1규칙-적용범위
  - 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을 이송량(500톤)으로 할 것인지 총톤수(150톤 이상)로 할 것인지 논의한 바 우리나라, 미국,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찬성한 총톤수(150톤)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40.1 및 40.3규칙 - 급유작업(Bunker Operation) 포함 여부
  - 화물이송작업에만 이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급유작업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중국을 비롯한 소수국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지지한 대로 급유 작업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합의함. 다만 급유작업도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MEPC에 보고하기로 함

- 제40.2규칙 - FPSO 및 FSU의 규칙 적용 여부
  - FPSO 및 FSU에 이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한 후 중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의 반대가 있었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의견이 이들 해상구조물에서의 이송작업은 기존의 선박간 화물유 이송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다만 이들 작업도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급유 작업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MEPC에 이를 보고하기로 함
- 제41.2규칙 - STS Plan의 강제화 여부
  - 호주를 비롯한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STS Plan을 강제화하는 문구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함
- 제42규칙 - 통보요건의 삭제
  -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보요건을 규정한 제42규칙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은 투표결과 찬성11 반대20으로 부결되었음. 이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 구역을 영해, EEZ, 영해 및 EEZ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영해와 EEZ 모두에 이 규칙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17표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다수의견으로 채택된 17표는 모든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일부 회원국이 제기함에 따라 의제를 토론하는 도중 도출된 모든 의견들을 회의록에 반영하고 판단은 MEPC에 맡기는 것으로 합의함
- 제43규칙 - 추가 요건
  - 추가 요건을 규정한 본 규칙은 삭제하기로 함
- 초안작업반의 구성
  -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상기 토론 결과와 통신작업반이 제출한 BLG 12/8의 부속서를 기초로 초안작업반이 결성되어 작업한 후 MARPOL 부속서 1 제8장의 초안 문구작업을 완료함

의제 9	사고분석
------	------

- 제출된 안건 없음

의제 10	IACS 통일해석에 대한 검토
-------	------------------

- 제출된 안건 없음

의제 11	선체에 생물부착에 의한 수생 생물종 이동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의 개발
-------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EPC56차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는 새로운 작업(MEPC 56/19/3)으로 “선체에 생물부착에 의한 수생 생물종 이동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침의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MEPC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동 작업을 BLG12차의 새로운 작업으로 채택하였음
- BLG12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를 의장으로 하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시간이 부족하여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으며, 이 의제의 전문가들이 선박평형수 관련작업반에 거의 있으므로 의제 12/11을 선박평형수 관련 작업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과 선박평형수 관련 작업반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므로 별도의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평형수 작업반에 통신작업반 구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작업지침서를 검토하도록 함
- 평형수 작업반으로부터 선체 생물 부착 오염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고 Dr. Naomi Parker (뉴질랜드)를 의장으로 하는 통신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함

## 의제 12

MARPOL 부속서 I 화물 및 연료  
유의 MSDS 권고안에 대한 검토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IBIA는 BLG 11 및 MSC83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대한 SOLAS 규정 VI/5-1에서 인용하고 있는 MSC/Res.150(77)을 MARPOL 부속서 I 화물과 선박연료에 적용하면 ISO 11014 및 US OSHA와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데이터보다는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MSDS를 선박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제안함
- INTERTANKO는 IBIA의 권고는 이미 BLG 10차에서 수용하지 않았으며, BLG 11도 채택된 SOLAS 규정 VI/5-1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MSC 83에서 2008년 완료목표의 High Priority 의제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BLG 12에 지시하였음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INTERTANKO의 안에 대하여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ICS, 덴마크, 독일이 찬성하였으며 IBIA 및 싱가포르의 안에 대하여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가 찬성하였음
- 이에 영국의 제안으로 Small Group을 구성하여 MSC/Res.150(77)의 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Small Group은 어떻게 MSDS가 식별된 제품에 대하여 적합함을 보장할 것인지와 MSDS에 있는 정보를 특정한 선적분 또는 생산분 마다 시험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함
- 따라서 Small Group은 선하증권, 기름인도증

또는 다른 선적서류에 식별된 제품이름을 기초로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과 제품의 특성에 관하여 MSDS에 있는 정보는 운반되는 제품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에 합의함

- 또한 MSDS가 운반하는 제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Blending 등을 통하여 특성이 변하면 제품의 이름이 변하지 않더라도 이에 적합한 새로운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합의함
- Small Group은 MSC/Res.150(77)의 부속서 1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보고하였으나 부속서 2는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Small Group이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통신작업반을 구성하여 논의한 후 2009년 BLG 13에서 작업반 또는 초안작업반을 개설하여 이 작업을 종결하기로 함

## 의제 13

## IGC Code의 개정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SC83에서 2010년 완성을 목표로 IGC Code를 개정하는 것을 높은 우선순위의 새로운 작업항목으로 BLG 전문위원회의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BLG 12의 잠정적인 의제로 포함하는데 동의하였음
- IGC Code를 선박의 개발과 운항의 관점에서 최신기술, 운항 현황, 선박의 크기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기 위한 작업임
- IGC Code의 검토에 관한 조정반(Steering Group)의 첫 번째 회의가 영국을 의장으로 개최됨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 제안한 목적 기반 표준개념(Goal based standard concept)을 기초로

하여 IGC Code를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위원회는 동 개념이 MSC에서 새로운 기술개념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의제 14 | BLG 13 의제 및 작업계획**

- 차기회의작업반(WG) 및 조안작업반(DG) 구성계획
  - 2004년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시 통일된 이행을 위한 지침서 개발
  - 가스 운반선 규정의 개발
  - 위험 화학품의 안전 및 오염 유해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정안의 준비
  - MARPOL 부속서 I 화물 및 연료유의 MSDS 권고안에 대한 검토
- 차기회의(BLG 13) 일정 : 2009. 3. 2~3. 6 / IMO 본부

**의제 15 | 차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Mr. Z. Alam(싱가포르)이 의장에, Mr. S. Ofterdal(노르웨이)가 부의장에 재 선출됨

**의제 16 | 기타작업**

남극해에서의 중유(HGO)의 사용 및 운송(BLG 12/16-노르웨이; BLG 12/16/1-뉴질랜드)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EPC 54차에서 노르웨이는 남극의 환경 보호를 위해 남극해에서의 중유사용 금지를 제안하는 문서를 제출함
- MEPC 54는 남극해의 수색구조선에 대해서는 중유사용 및 운송금지를 면제할 것을 제시하고, BLG에서 추가 논의토록 함

- BLG 11에서 노르웨이는 수색구조선을 제외한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어선 등 모든 선박의 중유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함
-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상기 제안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산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EPC 56에 지침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MEPC 56은 이중 선체구조와 연료유 저장 탱크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 등, 가능한 모든 선택을 세밀히 검토할 것을 BLG 12에 다시 위임하였으며, MEPC 57에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함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노르웨이는 BLG 11에서 제출한 MARPOL Annex I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함 (BLG 12/16)
- 뉴질랜드는 남극해에서 중유 사용금지 제안에 대한 논의 진전에 도움을 주고자 중유 사용과 연계된 위험성에 관한 정보 및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공하였으며, DE 전문위원회와 협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BLG 12/16/1)
-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극해에서 중유 사용 및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노르웨이의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뉴질랜드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검토되어야 함에 동의하고, 동 안건을 BLG 정식 의제로 MEPC에 요청한 후 DE와 협조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함

GTL유의 운송요건(BLG 12/16/2, OCIMF)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GTL유는 현재 MARPOL Annex I에 따라 운송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확증을 위하여 OCIMF는 전문위원회로부터 향후에도 GTL유를 MARPOL Annex I에 따라 계속 운송할 수 있다는 BLG Circular 발행을 요청함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대부분의 국가가 OCIMF의 제안을 지지하였으며, BLG Circular 보다 MEPC Circular가 더 적절하다고 표명하였음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OCIMF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BLG Circular를 먼저 발행하고 향후 MEPC Circular 발행을 MEPC 58차에 요청하기로 결정함

### MARPOL Annex II Reg.12 및 18과 관련된 정보용 BLG Circular 제안(BLG12/16/3, INTERTANKO)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INTERTANKO는 NLS 화물을 육상에 하역한 후 육상배관 내의 잔존물을 다시 선박으로 배출시키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MARPOL Annex II Reg.12 및 18의 명백한 위반임을 공지하는 BLG Circular의 발행을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였음(BLG12 /16/3, INTERTANKO)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INTERTANKO에 상기 관련정보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향후 해당 자료에 근거해 다시 BLG 회람문서 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함

### 천연가스 수산화입상체(NGHP) 운반선(BLG 12/INF.5, 일본)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일본은 MSC 82에 NGHP 운송선박의 안전요건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MSC 83은 해당 작업과제를 BLG의 새로운 의제로 추가하는데 동의함
- 일본은 BLG 11에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천연가스 수산화입상체 운반선의 안전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검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한 명확한 제안을 상위 위원회로부터 검토 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일본은 이번 회기(BLG 12)에 새로운 의제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회기에 토의할 수 있도록 NGHP 운송선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
- 이번 회기에 특별한 논의 사항은 없었음

### 탱크선의 좌초나 충돌에서 발생하는 화물유출 제한(BLG 12/INF.9, 도미니카)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MARPOL Annex I, Reg.19의 이중선체 구조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 자료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동 안전관련 특별한 논의 사항은 없었음

### 화물창으로 화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관련문서 : MSC 83/10/1 및 MSC 83/10/2)

#### 1. 의제도입 배경 및 논의경과

- 케미칼운반선의 화물탱크에 설치하는 PV밸브(압력/진공밸브)의 형식시험 요건에 관한 문제로 작년 FP51 및 BLG11에서 관련된 지침인 MSC/Circ.677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 MSC83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를 BLG에 지시함
- 덴마크는 FP 51/18로 문서를 제출하여 인화

점이 60℃ 미만인 화물로 MESH (Maximum Experimental Safe Gap)가 0.9mm 미만인 화물을 운송하는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에 설치되는 PV밸브(압력/진공밸브)는 형식시험 시 MSC/Circ.677 (MSC/Circ. 1009로 개정됨)의 요건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함

- 동 회의에서 IACS는 MSC/Circ.677에 “--- chemical tankers dedicated to the carriage of products with ----”로 되어 있어 해당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에만 이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FP 전문위원회는 MSC/Circ.677이 이 문제를 적합하게 다루고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선박의 설비가 불꽃의 전파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화물이 적합증서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하였음
- BLG 11회의에서도 IACS는 MSC/Circ.677의 상기 문구의 해석에 따라 해당 화물들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에만 이 요건을 적용하고, MESH가 0.9mm 이상인 화물과 미만인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선박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음
- 화염통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틈새를 적게 할 경우에는 반대로 막힐 위험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이 규정을 제정할 당시 제기되었음과 시험할 때 사용하는 시험가스에 대하여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기록이 당시의 작업문서인 FP32/WP.9에 있었음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기술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MESH가 0.9mm 미만인 화물들만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에 대하여만 이 요건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이 과정에서 아국은 아국의 현존선과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발언을 통하여 IACS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였음

- 이에 덴마크는FP 전문위원회와 BLG 전문위원회가 동일한 안전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을 내린 점과 BLG 11의 결론이 다른 국제규격의 요건과 상치된다고 주장하면서 MSC 83/10/1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고할 것을 요청함
- 유럽조선소연합회(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CESA)는 상기의 건에 대하여 MESH가 0.9mm 이상인 화물이나 미만인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에 IACS의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럴 경우 상당한 선박 건조 비용이 절감됨을 주장하는 내용의 MSC 83/10/2를 제출함

## 2.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에서 인화점이 60℃ 미만인 화물로 Maximum Experimental Safe Gap이 0.9mm 미만인 화물을 하나라도 운송하기 위해서는 PV밸브(압력/진공밸브)가 이 요건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는 덴마크의 안을 네덜란드 및 슬로베니아가 찬성하였음
- 이에 반하여 해당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선박에만 이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IACS는 금번 회기에는 촉박한 시간으로 이 문제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회기에 MSC/Circ.677에 있는 요건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기 위한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절치는 아국과 노르웨이가 지지하였음
- 이어진 논의에서 현 규정이 모호해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과 덴마크가 제안한대로 규정을 바꿀 경우 현존선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문제를 포함한 파급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거론되었음. 따라서 전문위원회는 이 문제에 관한 완료 기한을 2009년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MSC에 요청하면서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금번 회기에서의 이 문제 논의는 종결됨

## IV. 아국 활동 사항

- 2004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을 위한 지침 개발
  - G2의 5장 샘플링 포인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의제문 BLG 12/5/14를 바탕으로 WG에서 아국의 의견을 발언하여 ICS와 일본 등의 지지를 얻음
  - 미국은 아국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동일한 내용을 연구한 자료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하고, 샘플링 포인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초안을 마련하여 배포함
  - 아국은 미국이 발표한 자료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오류를 지적하고 ICS,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의 지지를 얻음
  - 미국은 연구 자료의 오류를 인정하고, 아국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남기고 특정한 길이에 대해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찬성을 하여 아국이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지침개정을 마무리하였음
  - 아국은 Air Pipe를 통한 샘플링 방법이 Non-return device에 의해 일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적절하게 문장을 수정함
-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저감기준과 관련하여 아국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아국 산업계에 유리한 기준안 마련
  - 질소산화물(NOx) 배출저감기준은 엔진 설계 및 생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아국은 당초 요구안을 중국 등 주변국가와 공조하여 아국 산업계에 유리한 기준안을 선정하도록 함
  - 황산화물(SOx) 배출저감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3가지 단계적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MEPC에 보고하도록 함

## V. 향후 조치사항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 제정

- BLG12에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MEPC(58)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므로 평형수 처리장치의 승인기준 등에 대한 의제문서 제출을 통하여 적극적인 아국의 입장 전개 필요
- IGC Code 개정 관련
  -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앞선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업계 및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정보수집, 연구·분석 및 작업반 참여 등 필요
- 선박용 신엔진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치 논의와 관련
  - 신엔진에 대한 새로운 NOx 기준이 이번 BLG 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산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추후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Tier III 적용과 관련하여, 아국의 기술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MEPC 57차 회의에서 이 기준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국들과 충분히 협의 필요
-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배출 저감 논의와 관련
  - 3가지 단계적 저감기준을 MEPC에 보고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관련 상황이 유사한 일본, 싱가포르 등과 협력하여 아국에 유리한 선택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기타사항
  - 차기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회기간 통신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계와 정보를 공유하여 아국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여야 할 것임
  - 본 전문위원회의 작업범위가 DE 등 다른 전문위원회와 많이 연계되어 있어 정보 수집, 교환 등 협력